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수단 강화 등〉

■ 김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1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4
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수단 강화	4
2. 재난피해자등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치료·간병·보조장구 소요 비용 지원 명시	9
3. 재난피해자등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조사 법적 근거 마련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윤의원 등 23인
2. 제안연월일 : 2025. 4. 7.
3. 회부연월일 : 2025. 4. 8.

II.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실종자·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더욱 크게 발생하며, 재난 구호 조치 외에도 후유증 치료나 간병, 보조장구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확보와 연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돕는 대피 도우미 제도를 신설하고, 마을방송을 활용한 재난 경보 시스템, 대피장소 사전 안내 및 숙지 등 실질적인 대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료

비지원을 명시하여 재난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고,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실태조사와 장기추적조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 제40조, 제65조의3, 제66조, 제71조의3, 제74조의3 및 제74조의6).

Ⅲ. 주요내용

- 가. 재난의 신속한 전파와 대피를 위해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제3항제6호 신설).
- 나. 사전에 재난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 주민들에게 대피장소의 위치, 접근 경로를 사전에 안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2항 신설).
- 다. 재난 피해자의 치료를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재난 종료 이후에도 피해자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 라. 재난으로 인한 부상의 치료 및 장기적인 후유증, 간병, 보조장구 사용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 제3항제9호 신설).
- 마. 재난 피해자 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 등의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의3 신설).
- 바. 재난 발생 시 거동이 불편하여 신속한 대피가 불가능한 노인·장애인과의 같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대피 도우미 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6 신설).

IV. 검토의견

1.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수단 강화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실시를 위하여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에게 ‘재난 대피 안내 방송’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사전에 대피장소를 지정한 경우 주민들이 해당 장소를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의무를 신설하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도우미 등 지원 인력 지정·운영 및 대피 시스템 마련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제3항제6호, 제40조 제2항 및 제7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② (생략)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	③ ----- ----- ----- ----- ----- -----.

현행	개정안
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u><신설></u> ④ ~ ⑫ (생략) 제40조(대피명령)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신설></u>	-----. 1. ~ 5. (현행과 같음) 6. 읍·면·동의 이장 및 통장의 <u>재난 대피 안내 방송</u> ④ ~ ⑫ (현행과 같음) 제40조(대피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사전에 대 피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들 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해당 장소 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4조의6(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 원인력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도 우미 등 지원인력을 사전에 지정 · 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피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재난 문자 송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 신문 게재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¹⁾,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²⁾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피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피장소는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³⁾, ③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가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기상청장이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진·지진해일·화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난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디지털광고물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전기통신사업자나 방송사업자, 휴대전화 또는 내비게이션 제조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재난의 예보·경보 실시 사항이 사용자의 휴대전화 등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⑦ ~ ⑫ (생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② 시·도긴급구조통제단과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되,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소방서장이 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⁴⁾.

그런데 최근 잦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안전취약계층⁵⁾”에게 예상치 못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25년 3월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의 경우 노령 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 사망자 총 28명 중 26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하였고, 이들 중 일부의 휴대전화에는 미처 읽지 못한 재난 문자가 수백 통씩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음⁶⁾.

이에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6) 2025. 3. 28. 한국경제. “최악의 산불’ 사망자 28명 중 26명, 거동 힘든 노인이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85347i>

노령 인구가 많은 읍·면·동의 이장이나 통장에게 마을방송을 통해 재난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②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재난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한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 도우미 등 지원 인력을 사전에 지정·운영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피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인력과 대피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의 ‘대피명령’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지역별 인구 구조 및 재난관리 여건 등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피 지원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재난피해자등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치료·간병·보조장구 소요 비용 지원 명시

개정안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함)에 대한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 대상으로 “재난피해자등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 및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65조의3(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이하 “재난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이하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를 함께 설계하고 운영

현행	개정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생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설>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재난피해자등의 주치의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재난피해자등의 치료 및 간병</u>

[illegible]

현행	개정안
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민간 긴급구조지원요원이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피해주민의 구호,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금융지원, 생계안정 지원, 소상공인 지원, 세금 감면, 농·어·임업 피해 시설 복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

그런데, 현행법은 재난 피해자가 입은 부상 및 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피해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들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주치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재난 피해 지원 대상으로 “재난피해자들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난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료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과 재난 피해 양상 및 현행법의 성격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⁹⁾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¹⁰⁾하고, 수급권자의 질병·

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9)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10)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부상 등에 대해 ① 진찰·검사, ②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등의 의료급여¹¹⁾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기상황”의 범위에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포함¹²⁾하고 있고, 긴급지원의 범위에

-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 ④ (생략)
 - 11)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③ (생략)
 - 12)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규정¹³⁾하고 있음.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재난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개정안과 같이 재난피해자들의 치료, 간병, 보조장구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복 입법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재난피해자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를 요하는 피해는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므로,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전문 인력의 수급 및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주치의 제도의 개념상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은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3)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 연계 지원
 - 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 ②·③ (생략)

있으나, 주치의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난 피해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재난 피해자의 치료·건강상담 등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의 도입은 제도의 구체적 설계 방향¹⁴⁾에 대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사전 연구 등이 충분히 선행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재난피해자등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 등에 관한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기본법적 성격으로 재난 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 한정하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 재난 양상과 피해 유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 및 지방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기 보다는 현행법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14) 주치의 수행 주체(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 재원(건강보험 또는 국가재정), 피해 원인(재난 유형별)에 따른 주치의 필요성 여부, 주치의 서비스 시작·종료 시기 등

3. 재난피해자등 실태조사 및 장기추적조사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1조의3(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피해자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 종료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행	개정안
	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장기추적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면 그 피해의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피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¹⁵⁾,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상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상황을 조사한 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중앙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기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 제59조(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이 조에서 “특별재난지역 피해”라 한다)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8조제2항에 따른 피해 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9조(재난원인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재난원인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안정적인 회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상태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데이터 축적 및 연구개발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자등의 신체·심리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재난 종료 이후에도 재난피해자등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치료 및 신체·심리 상태 정보에 대한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인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 이후 재난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조사 근거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난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개정안의 신체·심리 상태에 대한 조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의 목사의 목적을 ‘신체·심리 상태의 확인’과 ‘지속적인 치료’로 하기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장기 추적 조사에 경우 실태조사의 대상 및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이하 “재난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편성하고,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
2. 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③ ~ ⑦ (생략)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실태조사와 별도 조사로 구분하여 차이를 둘 필요 및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임.

한편, 2025년 6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재난의 효율적인 복구를 위하여(김병기의원안)’ 또는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민형배의원안)’ 재난 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회부되어 있는데, 모두 재난 피해의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위원회 심사 시 병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2026년 3억 7,200만원, 2030년 4억 3,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9억 3,700만원(연평균 3억 8,700만원) 이상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¹⁷⁾.

17)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	372	380	387	395	403	1,937	387

- 주: 1.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안 제71조의3제2항 신설)는 재량규정 재정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재난피해자등에 관한 장기추적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유사사례의 사업 총액을 참고하고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추계

문 의 처

02)6788-5349